

의안번호	2212917
의 퇴 인	남인순의원
회 답 일	2025.11.17.
추계번호	25C50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8조의2 (가산금)	○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¹⁾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²⁾을 뺀 금액의 <u>100분의 40</u>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함(제1항) - (현행) 100분의 10 - (개정) 100분의 40	의무규정
2	안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5. 제7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신설)	의무규정

1) **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2) **법 제78조의2제1항**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8조의2 (가산금)	○ 가산금이 증액될 경우 건강보험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연동되는 국고지원금 ³⁾ 도 증가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를 조정을 통하여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절차 ⁴⁾ 가 있으므로 보험료 증가분만큼 건강보험료를 조정하여 이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가산금 증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
2	안 제104조 (포상금 등의 지급)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것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대상에 직장가입자 허위 등록에 대한 신고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⁵⁾.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3) 현재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4) 건강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를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것으로 예상되며⁶⁾,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 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 지출 금액에 비례하여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⁷⁾⁸⁾

□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허위 신고 건수와 포상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으로 추계가 곤란함

- (신고 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도 직장가입자 허위 신고에 대한 총 적발 건수는 3,991건이나, 향후 포상금 제도 신설에 따라 허위 신고 사업장을 공단에 신고할 건수는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포상금액) 현재 징수금과 포상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6]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 이를 가정하기 어려움
 - 참고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을 신고한 경우나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의 포상금은 아래 [표 1]과 같음

[표 1] 포상금 지급 기준 사례

연 번	유형	징수금	포상금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을 신고한 경우	○ 1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20/100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200만원+[(징수금-1천만원)×15/100]
		○ 2천만원 초과	○ 350만원+[(징수금-2천만원)×10/100] ○ 다만,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 6) 건강보험료를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7)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 8) 2022~2024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연 번	유형	징수금	포상금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준요양기관·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 1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징수금×30/100
		○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00만원+[(징수금-1천만원)×20/100]
		○ 5천만원 초과	○ 1,100만원+[(징수금-5천만원)×10/100] ○ 다만, 2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함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6]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